

본 의안은 제265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 
본회의(2022.07.14.)에서 원안가결된 의안임.  
2022. 07. 14.  
성 주 군 의 회 의 장

##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22년 7월 5일  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사회 변화에 따른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 관광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- 1)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
- 2) 관광두레사업 지원
- 3)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등

나. 안 제6조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정리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)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
  2.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
  3.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·운영
  4. 관광두레사업 지원
  5.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
  6. 지역자원 조사·연구
  7.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
  8.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기관 또는 단체,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중전의 제1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